의 안 번 호

1392

【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근거법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2조의2에 따라 재 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협의와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,
- O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 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"중앙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12.30.〉
 -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민관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3.8.6.]